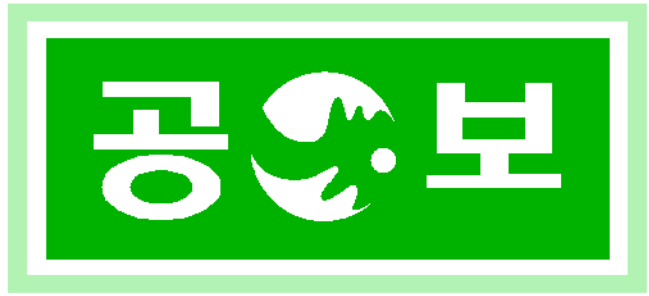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686 호 2011. 4. 4(월)

## 조 례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59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59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단,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긍정성 있는 조례로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1/3 → 과반수(제4조 제3항)**

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과반수 → 3분의2(제6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1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4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며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00·7·31, 07·0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제1차 정례회 기간 → 제2차 정례회 기간(제2조 제2항)